

관리번호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자국코드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인)	주소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코드	지방소득세	국내분 소계
	합	국외분 소계
④ 양도일		
⑤ 과세표준		
⑥ 세액		
⑦ 산출세액		
⑧ 감면세액		
⑨ 외국납부세액공제		
⑩ 특별징수세액공제		
⑪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타	
	합계	
⑫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⑬ 납부(환급)할 총세액		
	(7)-(8)-(9)-(10)+(11)-(12)	

세액의 수정 사항이 없어 동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거나 환급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www.wetax.go.kr)를 하시거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을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의 수정이 있는 경우 아래 납부서는 효력이 없으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신 경우는 이 안내문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절 취 선 >

납부할 세액의 변경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받은 납부서 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의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시·군 ()	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납세자용)
	납세번호 납세자: 납세지번호: 주소: 납부기한: 납세지: 양도소득세(국세) 신고일자(세무서명):	납세번호 과세기관 검 회계 과목 세목 연도 월 구분 읍면동 과세번호 검 납부세액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시·군 () (수납은행 확인용) 납세자: 기관번호 세목 납세연월기 과세번호 전자납부번호 세목 납부세액 합계	아래 가상계좌로 계좌이체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일 까지, 납부가능시간: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및 제103조의7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나, 「지방세법」 제103조의5제5항 및 제103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의 납부할 세액에 변동이 없어 이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담당자: 문의처: ※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납부번호 수납인
수납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년 월 일